

인천공항 환승 수하물서 권총·실탄 적발, 무엇이 문제인가

- 위탁수하물 내 권총·실탄 적발 사건의 대테러·항공보안 측면 시사점 -

발행일 2026. 9. 19. | 제2026-8호

9. 15. 미국 댈러스에서 인천을 거쳐 하노이로 가던 미국인 환승객의 위탁수하물에서 38구경 권총 1정과 실탄 16발이 발견돼 국정원·공항경찰단·공항공사가 회수

→ 항공기 납치 등 기내 테러로 이어질 상황은 아니지만, 신고되지 않은 총기가 출발지 검색을 지나 국제 환승망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수하물 보안체계의 빈틈을 드러낸 사건

□ 사건 개요

- 9. 15. 17:08경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환승 위탁수하물 보안검색 중 38구경 권총 1정과 실탄 16발 발견
- 승객은 댈러스 → 인천 → 하노이로 가던 **미국 여성**. “어머니가 호신용으로 산 권총이 가방에 든 줄 몰랐다”고 진술
- 국정원·인천공항경찰단·인천공항공사가 확인한 뒤 승객 동의를 받아 **안보 위해물품 포기 절차로 회수**

□ 대테러 측면의 문제점

가. 테러 악용 가능성

- 위탁수하물은 비행 중 승객이 접근할 수 없는 화물칸에 실리므로, 이 총으로 **기내 총격·납치**를 벌일 가능성은 없음
- 실탄 16발도 항공기 파괴용 폭발물과는 다름. 제대로 포장된 소형 탄약은 **국제기준상 위탁 운송 허용 품목**

나. 상황별 위협 평가

- 화물칸 안의 총기는 ‘총기에 대한 의도적인 접근이나 내부자와의 공모’가 더해질 때 실제 위협으로 바뀔

위협 경로	평가
기내 총격·납치	승객이 화물칸에 접근할 수 없어 직접 가능성 낮음
우발적인 발사	총기의 장전 여부와 포장 상태에 따라 위험도 증가
내부자와 공모	수하물 처리구역 직원이 총기를 빼내 보안구역으로 전달 → 실질적인 공항·항공기 위협
목적지 밀반입	도착지에서 가방을 찾아 총기를 불법 반입 → 가장 직접적인 치안 위협
검색체계 시험	테러조직이 총기·실탄이 검색체계를 통과하는지 시험한 뒤 후속 공격 준비
폭발물 반입	같은 빈틈으로 언제든지 폭발물이 통과할 수 있음 → 총기보다 더 심각한 시스템 우려

다. 출발지 검색에 대한 신뢰 구조 약화

- ICAO 부속서 17은 환승 위탁수하물도 **검색이 원칙**. 출발국 보안수준이 동등하다고 인정(OSS)하면 재검색 생략 가능
 - * 유럽연합이 폭넓게 시행, 미국-영국은 2025. 2.부터 댈러스·애틀랜타-런던 노선에서 시범 운영. 우리나라는 항공보안법 제17조에 따라 환승 수하물 보안검색 실시

- 재검색 생략 자체가 허점은 아님. 문제는 **출발지에서 농친 실패와 오류가 인천·하노이까지 전이된다는 점**
- 위탁수하물 검색장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폭발물 탐지. 미국에서는 신고된 총기가 합법이므로 총기 형상이 보여도
 ① 영상 판독 ② 항공사 신고·승인 기록 ③ 환승·도착국 반입 허가가 연결돼야 판단 가능

□ 총기·실탄 관련 미국·국제 규정

가. 총기 및 실탄에 대한 규정 체계

- 미국과 국제기준은 총기·탄약 위탁 운송을 **조건부로 허용**. 총기는 보안규정, 탄약은 위험물규정 적용

구분	관리 대상	핵심 내용
TSA (49 CFR § 1540.111)	총기·무기	비장전·항공사 신고·잠금 하드케이스, 위탁만 허용
FAA·교통부 (49 CFR § 175.10)	탄약(위험물)	전용 상자 포장, 위탁만, 구경 19.1mm 이하
IATA DGR (제67판, 2026)	국제선 위험물	1.4S 탄약 1인당 5kg 이하 , 항공사 사전승인
출발·환승·도착국 법률	총기 소지·수출입	총기의 국가 간 이동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

나. TSA : 총기는 ‘신고·비장전·잠금’이 조건

- 승객은 검색대·보호구역·기내에서 총기·폭발물 소지 금지 → **휴대 불가, 위탁만 가능**(§ 1540.111(a))
- 위탁 요건 (§ 1540.111(c)) : ① **사전 항공사 신고** ② 비장전 ③ 하드케이스 ④ 잠금(열쇠·번호는 승객만 보유)
 * 2024년 미국 검색대에서 적발된 총기 6,678정 중 **94%가 장전 상태**. 델러스-포트워스공항이 390정으로 전국 2위. 위반 시 최소 3,000달러, 최대 약 1만 5천 달러 과태료

다. FAA : 실탄은 ‘전용 상자에 넣어 위탁만’

- 소형무기 탄약(19.1mm 이하)은 **개인용으로 위탁수하물만**, 소량 탄약용 상자에 안전하게 수납 (§ 175.10(a)(8))
- 탄창·클리프도 상자에 넣어야 하고 **느슨한 실탄은 불가**. 흑색화약·무연화약·뇌관은 아예 금지
- 연방규정 자체에는 5kg 한도가 없으나, FAA는 국제선·항공사 기준으로 **통상 1인 5kg 이하**로 안내
- 환승 수하물에도 같은 예외 적용 (§ 175.10(b)) → 적법 접수된 탄약은 환승 가능하나 **출발지 절차 누락도 승계**

라. IATA : 국제선은 ‘5kg·항공사 승인’

- IATA 위험물규정 표 2.3.A : **본인 사용 목적, 1인당 총중량 5kg 이하**, 합산 금지, 항공사 승인, 위탁만
- 총기는 비장전·전용 케이스·항공사 사전 협의가 조건. IATA 규정보다 **국가·항공사 기준이 우선**하며 더 엄격

마. 이번 사건 적용 및 판단

- 권총 1정·실탄 16발은 수량만 보면 규정 범위 안. 그러나 적법 운송이 되려면 ① **비장전** ② **잠금 하드케이스** ③ **체크인 신고** ④ **항공사 승인** ⑤ **실탄 전용 포장** ⑥ **환승·도착국 허가**가 모두 충족돼야
- 승객이 총기가 든 사실조차 몰랐다면 신고·승인이 있었을 가능성은 낮음 → **미국 규정의 핵심 요건 미충족 가능성**

□ 항공보안 측면의 시사점

가. 인천공항 환승검색이 ‘최종 안전판’ 역할

- 출발국에서 걸러지지 않은 총기를 환승검색에서 잡아낸 것은 **우리 검색체계가 마지막 방어선으로 작동했다는 뜻**
→ 발견 경위(정기·선별·정보 기반)를 분석해 잘 작동한 요소를 검색 절차와 판독 교육에 반영

나. ‘총기 영상’과 ‘승인 정보’를 연결해야

- 환승 수하물에서 총기 형상이 보이면 출발지 항공사의 **신고·승인 기록을 바로 대조해** 미신고 총기인지 판단해야
→ 총기 승인정보를 수하물 추적시스템과 연계해 **‘총기 영상은 있는데 승인 정보가 없는 수하물’을 자동 분리검색**

다. 내부자 위협 관리와 함께 봐야

- 실질적 위험은 **수하물 처리구역 내부자의 유출** → 출입 통제·CCTV·불시점검, 조업사 직원 신원조사 강화

라. 상호인정(OSS) 논의에 주는 교훈

- 재검색 생략은 상대국 검색 품질에 대한 신뢰가 전제. 출발지 누락이 확인될 때마다 그 신뢰가 흔들림
→ 앞으로 우리나라가 상호인정 협정을 검토할 때 **총기 신고정보 공유 등 ‘정보 연계’를 조건에 포함**

마. 승객 안내와 항공사 접수 절차 점검

- “몰랐다”는 유형이 반복됨 → 미국발 승객에게 **총기 소지 확인 질문·안내 강화**, 국내 항공사도 접수 절차 점검

□ 결론

- 기내 테러 직전 상황은 아니나, **신고되지 않은 사용 가능한 총기·실탄이 국제 환승망을 통한** 중대한 보안통제 사건
- 대응 우선순위는 ① **달러스 신고·판독 기록과 인천 발견 경위 규명** ② **승인정보·수하물 추적 연계** ③ **내부자 관리**
- 협회는 조사 결과와 미국·ICAO 동향을 **지속 모니터링**하고, 환승 수하물 검색 교육에 반영할 사례로 정리할 방침

※ 참고자료

- [인천공항 미국인 환승객 가방서 ‘권총·실탄 16발’ 발견](#) (머니투데이, 2026. 9. 19.)
- [49 CFR § 1540.111 Carriage of weapons, explosives, and incendiaries](#) (미국 연방규정 eCFR)
- [PackSafe – Ammunition, 49 CFR § 175.10\(a\)\(8\)](#) (FAA)
- [IATA DGR Table 2.3.A – Dangerous Goods Carried by Passengers or Crew](#) (IATA, 제67판, 2026)
- [Recognition of Equivalence and One-Stop Security: Challenges and Opportunities](#) (IATA, 2025)